



# 허가대상물질 작업수칙 등

제3편 보건기준

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제462조 ~ 제470조

## 1 작업수칙 및 잠금장치 등

■ 허가대상 유해물질(베릴륨 및 석면 제외)을 제조·사용하는 경우 다음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,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림

- ① 밸브·콕 등(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·사용 설비에 원재료 공급 또는 그 설비로부터 제품 등 추출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)의 조작
- ② 냉각장치, 가열장치, 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
- ③ 계측장치와 제어장치의 감시·조정
- ④ 안전밸브, 긴급 차단장치, 자동경보장치 및 그 밖의 안정장치의 조정
- ⑤ 뚜껑·플랜지·밸브 및 콕 등 접합부가 새는지 점검
- ⑥ 시료의 채취 및 해당 작업에 사용된 기구 등의 처리
- ⑦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
- ⑧ 보호구의 사용·점검·보관 및 청소
- ⑨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또는 반응조 등 투입작업
- ⑩ 그 밖에 허가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하는 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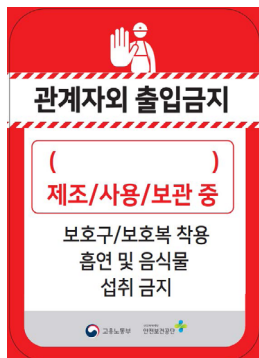


■ 허가대상 유해물질이 보관된 장소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

501  
허가대상물질  
작업장

관계자외 출입금지  
(허가물질 명칭) 제조/사용/보관 중

보호구/보호복 착용  
흡연 및 음식물  
섭취 금지



## 2 목욕설비 등

-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·사용하는 경우 해당 작업장소와 격리된 장소에 평상복 탈의실, 목욕실, 작업복 탈의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·용구 갖추어 둠
- 목욕 및 탈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입구, 평상복 탈의실, 목욕실, 작업복 탈의실, 출구 순으로 설치하여 근로자가 그 순서대로 작업장에 들어가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반대의 순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조치

### ☑ 외부>>작업장 IN

입구▶평상복 탈의실▶목욕실▶작업복 탈의실▶출구

### ☑ 작업장>>외부 OUT

입구▶작업복 탈의실▶목욕실▶평상복 탈의실▶출구



-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근로자가 착용하였던 작업복, 보호구 등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서 벗고 오염제거를 위한 세탁 등 필요한 조치 실시 (세탁을 위해서 오염된 작업복 등은 정해진 장소 밖으로 내가서는 안 됨)

## 3 긴급 세척시설 등 및 누출 시 조치

-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·사용 작업장에 긴급 세척시설과 세안설비 설치하고, 이를 사용하는 경우 맑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지
-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·사용 작업장에 해당물질이 샐 경우 즉시 해당 물질이 흩날리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실시



## 4 시료의 채취

- 허가대상 유해물질(베릴륨 제외)의 제조설비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준수사항
  - 시료채취에 사용하는 용기 등은 시료채취 전용으로 할 것
  - 시료채취는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시료가 흩날리거나 새지 않도록 함
  - 시료채취에 사용한 용기 등은 세척한 후 일정한 장소에 보관

## 5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·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

-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한 서류(취급일지) 작성하여 3년동안 보존

- 근로자의 이름
-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명칭
- 제조량 또는 사용량
- 작업내용
-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
- 누출, 오염,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사항



## 6 보호복 등의 비치

- 피부장해 등 유발 우려가 있는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불침투성 보호복·보호장갑·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약품 구비 및 사용토록 조치하며,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 지시에 따라 착용

